

내일배움카드제(실업자)

❖ 내일배움카드제(실업자)란?

실업자 및 자영업자 등에게 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고 일정 금액의 훈련비를 지원함으로써 직업능력 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, 직업능력개발 훈련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.

✓ 제도개요

- 구직자(신규실업자, 전직실업자)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고, 그 한도 내에서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, 훈련이력 등을 개인별로 통합 관리하는 제도
- 계좌발급 신청대상자는 현재 구직 중에 있는 신규실업자(고용보험가입이력이 없는 자) 및 전직실업자(고용보험가입이력이 있는 자)
- 훈련상담을 통하여 훈련목적, 훈련 필요성, 대상자 적격 여부 등을 판단하여 계좌발급(적합/부적합 결정)

❖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?

✓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훈련상담 결과 취·창업을 위한 훈련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

- 구직신청을 한 만 15세 이상의 실업자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은 사람(시장·군수·구청장이 통지한 취업대상자, 자활급여수급자)
- 여성가장(배우자가 없는 사람, 미혼여성 중 부모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 등)
-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연매출액이 15,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
- 비진학 예정의 고교 3학년 재학생(소속학교장의 인정 필요)
- 다음연도 9월 1일 이전 졸업이 가능한 대학(교) 재학생
- 일용근로자로서 최근 2개월 동안의 일용 근로내역일수가 1월 간 10일 미만
- 농·어업인으로서 농·어업 이외의 다른 직업에 취업하려는 사람과 그 가족
- 1개월 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(주 15시간 미만 포함)인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
- 군 전역예정인 중·장기복무자
- 결혼이민자와 이주청소년, 난민인정자 등

❖ 진행절차는 어떻게 되나요?

✓ 내일배움카드제(실업자) 진행절차

- 구직신청, 동영상공교육 이수 → 계좌발급 신청, 사전심의제, 훈련상담(고용센터) → 훈련과정 탐색, 일자리정보 수집 →

계좌발급 결정(고용센터), 내일배움카드 수령 → 훈련수강 신청(훈련기관) → 훈련비·훈련장려금 지원(고용센터)

✓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1차 기초상담 실시

- 1차 기초상담은 신청대상여부 확인, 훈련참여에 필요한 지참서류 및 요건 등을 확인
- 기초상담을 받지 않고 본인이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2차 상담을 곧바로 할 수 있으나, 요건 미비로 재방문

할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를 우선 방문하여 기초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함

✓ 2차 심층 상담시 필요한 지참서류 및 요건

• 구직신청

워크넷(www.work.go.kr) 개인회원 가입 후 이력서 작성 ▶ 구직신청 ▶ 구직인증(고용센터)
직업심리검사(고용센터에서 요구한 경우) ▶ 결과출력

• 동영상 시청

HRD-Net(www.hrd.go.kr) 개인회원 가입 후 '훈련안내 동영상' 시청 ▶ 시청확인증 출력

• 훈련과정 탐색

HRD-Net(www.hrd.go.kr) 접속하여 내일배움카드제(실업자) 훈련과정을 검색 ▶ 훈련기관 방문
상담(비용, 과정내용, 시설 등 확인) ▶ 훈련과정탐색결과표 작성(선택사항)

• 구비서류

신분증,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, 내일배움카드발급신청서, 동영상 시청 확인증(출력),
본인명의 통장(신한, 농협, 우리, 제일, 우체국 중 1개)

✓ 대상자별 추가 증빙자료

- 계좌발급 대상자 유형별로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

✓ 제출자료

- [필수] 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서
- [필수]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
- [선택] 훈련과정 탐색 결과표
- [선택] 재취업 활동 내역서 (취업 목적용)
- [선택] 자영업 활동 내역서 (창업 목적용)
- [선택] 신청자 의견서
- 원활한 계좌발급을 위하여 고용센터에서 요청하는 서식이 각각 상이할 수 있습니다. 반드시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작성해야 할 자료를 꼼꼼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.

- 카드 신청 후 수령시까지 4주 이내의 기간이 소요되며, 카드를 수령한 이후에 훈련수강 가능
- 체크카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, 발급 다음날부터 사용 가능
- 카드발급 진행상황 및 기타 카드 분실신고, 훼손신고, 재발급 신청, 출금계좌 변경 문의
(신한카드 1544-7000 / 농협 1588-1600)

❖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나요?

✓ 훈련비 지원

지원 대상		훈련비 지원율
일반실업자 등		최대 200만원까지 훈련비의 20~95% 지원(훈련비의 5~80% 및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자비부담)
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	2유형	최대 200만원까지 훈련비의 30~95% 지원(훈련비의 5~70% 및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자비부담)
	1유형	최대 300만원까지 훈련비의 전액 또는 90% 지원(지원한도를 초과하는 훈련비는 자비부담)

✓ 지원한도

- 계좌 지원한도: 일반실업자 등은 계좌발급일로부터 1년간 200만원 한도,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1유형 참여자는 1년간 300만원 한도
- 다만, 불가피한 사유 없이 훈련과정을 미수료(제적 및 중도탈락 포함)한 경우가 2개 이상인 사람과 계좌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훈련 미수강자. 부정 출결로 제적을 당한 사람은 계좌 재발급 시 계좌 한도를 50% 감액
- 계좌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훈련을 수강하지 않거나 부정 출결로 제적을 당한 경우에는 계좌의 사용이 중지(계좌한도 전액 소멸)되며,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훈련과정을 미수료하는 경우에는 계좌 지원한도에서 20만원을 차감

✓ 훈련장려금 지급

- 단위기간(1개월)별 소정훈련일수의 80% 이상을 출석한 경우 월 최대 116천원의 훈련장려금 지급
- 1일 5시간 미만인 훈련과정은 월 최대 5만원(2,500원 x 출석일수) 지급
- 1일 5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은 월 최대 116천원(5,800원 x 출석일수) 지급
- 실업급여(구직급여)를 지급받거나 훈련종료 후 30일 까지 수강평을 입력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훈련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.